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93
----------	------

제출연월일: 2019. 12. 3.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지적재조사, 지식·기술산업 육성, 정원정책 등 국가사무 및 지역현안 업무 추진에 따른 인력 증원을 위해 정원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642명”에서 “657명”으로 15명 증원, 집행기관의 정원을 “625명”에서 “640명”으로 15명 증원 (안 제2조)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안 제4조 별표 3)

- 총 계 : 642명 → 657명(증 15명)
- 일반직 : 639명 → 654명(증 15명)
 - 6급 이하 : 590명 → 605명(증 15명)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11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2020년 추가경정 예산 반영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 없음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45359호, 2019. 11. 21.)

라. 입법예고: '19. 11. 20. ~ 11. 25.(5일간, 의견 없음)

마.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울산광역시중구”를 “울산광역시 중구”로, “지방공무원의정원”을 “지방공무원의 정원”으로, “642명”을 “65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25명”을 “640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 관 별 직 급 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657			-		
정 무 직	소 계	1			-		
	구청장	1	1				
일 반 직	소계	654			-		
	3급	1	1				
	4급	5	3	1	1		
	5급	43	23	2	4	1	13
	6급이하	605			-		
별 정 직	소계	2			-		
	6급 상당 이하	2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u>울산광역시중구</u> (이하 “구” 라 한다)에 두는 <u>지방공무원의정원</u>(이하 “정원” 이라 한다)의 총수는 <u>642명</u>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625명</u></p> <p>2. (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u>울산광역시 중구</u>----- <u>지방공무원의 정원</u>-----</p> <p>- <u>657명</u>-----.</p> <p>1. ----- : <u>640명</u></p> <p>2. (현행과 같음)</p>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공무원 정원 증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9년 공무원 해당 직급 기본급 기준으로 인건비 산정

- 6급 4명 : 6급 12호봉 기준으로 산정 (67,887천원)
- 7급 5명 : 7급 7호봉 기준으로 산정 (53,429천원)
- 8급 3명 : 8급 4호봉 기준으로 산정 (43,537천원)
- 9급 3명 : 9급 1호봉 기준으로 산정 (37,642천원)

※ 매년 봉급 인상분은 3% 증액되는 것으로 추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연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지출	6급 4명	1,441,685	271,548	279,694	288,085	296,728	305,630
	7급 5명	1,418,307	267,145	275,159	283,414	291,916	300,673
	8급 3명	693,431	130,611	134,529	138,565	142,722	147,004
	9급 3명	599,539	112,926	116,314	119,803	123,397	127,099
	소계(a)	4,152,962	782,230	805,696	829,867	854,763	880,406
수입	인건비	0	0	0	0	0	0
	소계(b)	0	0	0	0	0	0
총비용(a-b)		4,152,962	782,230	805,696	829,867	854,763	880,406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4,152,962	782,230	805,696	829,867	854,763	880,406
국 비	-	-	-	-	-	-
구 비	4,152,962	782,230	805,696	829,867	854,763	880,406

1. 부대의견: 해당 없음
2. 협의사항: 인건비 예산 편성은 예산담당과 협의
3. 작성자: 기획예산실 지방행정주사보 이승훈(052)290-306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국 비	0	0	0	0	0	0
시 비	0	0	0	0	0	0
구 비	782,230	805,696	829,867	854,763	880,406	4,152,962
합 계	782,230	805,696	829,867	854,763	880,406	4,152,962

2. 재원조달방안: 연차별 구비 확보

3. 부대의견: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기 편성 요구된 2020년도 인건비로 충당하되, 부족 시 2020년도 추경에 반영 예정(예산담당 협의)

5. 작 성 자: 기획예산실 지방행정주사보 이승훈(052)290-3062

근 거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급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 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현행)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계	642				-
정무직	소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소계	639				-	
	3급	1	1				
	4급	5	3	1	1		
	5급	43	23	2	4	1	13
	6급이하	590				-	
별정직	소계	2				-	
	6급상당이하	2				-	